

전주지방법원 2019. 5. 29 선고 2018가단24341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

## 전 문

원 고 1. A

2. B

피 고 C

변 론 종 결 2019. 5. 1

판결선 고 2019. 5. 29

## 주 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1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08.1. 16. 접수 제404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원고 B에게,

(1) 별지 목록 기재 제2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08. 1. 16. 접수 제404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별지 목록 기재 5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과 2008. 1.24. 접수 제387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 1. 부동산등기의 현황

○ 원고들은 2008. 1. 15.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부동산'이라 하고, 순번대로 '제1부동산' '제2부동산' 등으로 지칭한다)을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 이에 따라 2008. 1. 16. 원고 A 소유의 제1부동산 및 원고 B 소유의 제2부동산에 관하여, 2008. 1. 24. 원고 B 소유의 제3내지 5부동산에 관하여,채무자를 원고들로 하여 피고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1호증의 1내지 5, 을 제1호증의 5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 2. 원고들과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은,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그 피담보채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 거나 이미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하고,이에 대하여 피고는,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그 원인이 없다고 볼 수 없고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제7호증의 1,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 지를 종합하면,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고 A의 이모로서 피고의 처인 D의 원고 A에 대한 60,000,000원의 대여금채권을 담보하는 것으로서,원인무효의 등기라고보이지아니한다.

한편으로,위 대여금채권은 그 변제기가 달리 정해졌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을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바에 따라 원고 A이 2007.2. 22. 피고의 통장으로 2,000,000원을 송금하고 2007. 3. 27.부터 2007. 12. 7.까지 D의 통장으로 합계 7,850,000원을 송금함으로써 채무를 승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때로부터 새로이 10년간 시효가 중단 내지 정지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늦어도 2017. 12. 8.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과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할 것이다.

### 3.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권태관

별지